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20
----------	-------

발의연월일 : 2023. 9. 27.

발 의 자 : 변재일 · 김의겸 · 양향자
김승원 · 임호선 · 정필모
허영 · 서영석 · 박완주
정태호 · 양정숙 · 민형배
인재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인 영상제작자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 100분의 7, 중소기업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들은 제작비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로 인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ver the top, OTT)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조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중견기업 100분의 25, 중소기업 100분의 30) 상향조정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상

콘텐츠를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제작비용”을 “제작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을 “다음”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7”을 “100분의 2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큐멘터리”를 “교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작비용”을 “제작비용 및 투자금액”으로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작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 -----다음 ----- ----- ----- ----- ----- ----- -----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 의 30----- ----- ----- ----- ----- ----- -----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3. (생략)

<신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

-----교
양-----

2. 3.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③ <u>제1항</u>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u>제작비용</u>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u>제1항</u> 및 <u>제2항</u>----- -----<u>제작비</u> <u>용</u> 및 <u>투자금액</u>----- ----- -----.
--	--